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혁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서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서는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60일로 보장한 이의신청 기간을 조례에서 7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위반되는 해당 규정을 삭제해 민원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제1항).

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2항).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년 6월 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 명 :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8-514호
----------	---------

발의년월일 : 2021년 5월 27일

발의의원 : 이성혁 의원

찬성의원 : 장인수, 김영희, 김명철,
이상복, 성길용, 한은경 의원

□ 제안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서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서는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60일로 보장한 이의신청 기간을 조례에서 7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위반되는 해당 규정을 삭제해 민원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제1항).
- 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2항).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현행조례 :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제10조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제9조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이의신청) ① <u>제9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u></p> <p>② <u>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u></p>	<p>제10조(이의신청) <삭 제></p> <p>② <u>시장은 제9조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그 이의신청에 대한 인 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p>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설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총괄부서에 의뢰할 것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할 것
3.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 허가여부를 통보할 것
4.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 설치 완료 후 관리부서로 준공신청을 할 것
5. 관리부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할 것

② 제1항제1호의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의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건립위치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시 건립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신청) ① 제9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